2013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13년 3월 28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박 원 식 위 원(의장직무대행)

임 승 태 위 원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 4. 결석위원 김 중 수 의 장(총재)

강 태 수 부총재보 김 종 화 부총재보

추 흥 식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안 희 욱 커뮤니케이션국장 신 운 조사국장

성 병 희 거시건전성분석국장 김 민 호 통화정책국장

유 상 대 국제국장

김 윤 철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영 경 금융시장부장

김 태 석 공보실장

문 한 근 의사관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2호 -2012년도 연차보고서(안)>

(1) 커뮤니케이션국장이「한국은행법」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2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연차보고서의 작성과 보완 등이 주관 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 내용 및 보 완·수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당행의 업무수행 내용 및 효과가 보다 충 실하고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하는 것이 좋겠 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제동향 부분에 교역조건 및 해외 직접투자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중점추 진전략 추진 성과 중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은행법 개정 내용이 중복 기술된 부분을 조정하고 비은행 금융 기관의 수신증가 요인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등 일부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은 통화신용정 책 부분에 기술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정원감축 등 2012년 중 추진한 조직개혁 측면에서의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일부 위원들은 참고자료 중 본문에 반영이 가능하거나 다른 보고서 와 중복되는 것은 조정하는 등 보고서 형식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2년도 연차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2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의안 제13호 -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3년 4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3년 4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금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의 작성과 위원간 의견조정 등이 주관위원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특 징,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 였음.

동 보고서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통화신용정책 운영실적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기술하였으며,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참고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자 노력하였음. 특히 최근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이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요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정책과 그 영향, 최근미 연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변화 및 관련 논의, 최근 일본은행 통화정책 완화의 주요내용 등을 참고로 수록하였음.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2장 1절 '금리정책'의 경제·금융 여건 관련 부분이 1장 '경제·금융동향'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축소·조정하고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진행 상황'이라는 참고자료의 제목을 '유로지역 금융시장 불안의 완화'로 변경하고 그 내용도 불안이 완화된 데 초점을 맞춰 서술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시장동향'이라는 참고자료의 내용을 축약하여 본문에 포함시키고 3장 1절 '주요국의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본은행 관련사항은 별도의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상세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들은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일부 설명을 보강하고 정책운 영 부분에 글로벌 정책공조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향후 보고서 작성시에는 동향 부분을 줄이고 정책운영 부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연관된 내용의 여러 참고자료를 하나로 묶어 참고자료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 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위원들이 동 보고서의 향후 개선방향으로 제시한 의견은 다음번 보고서부터 반영하겠다고 보고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13년 4월)(생략)

<의안 제14호 —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호, 제64조 제1항,「한국정책금 융공사법」제38조 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 콜 옵션 행사 및 조기상환 계획,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13년 4월 1일 만기도래하는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4,936억원을 재대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들은 은행자본확충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발행 은행이 조기상환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 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일부 은행이 금년 중 신종자본증권을 신규로 발행하여 기발행 증권의 조기상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을 실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기관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한 한국정책금융공사에 대한 대출 실시(안)(생략)

<의안 제15호 - 2013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직무대행이「한국은행법」제28조 및「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15호 — 「2013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최근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정부의 중소기업관련 정책방향에 부응한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부도업체수도 전년 평균수준을 하회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사정 지표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취약업종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자금조달 여건의 업종별, 신용등급별 차별화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13년 2/4분기에는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전 분기와 같이 9조원 수준으로 유지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년 1~2월중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및 부도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는데 이와 달리 중소제조업 자금사정 BSI는 악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자금사정 BSI는 서베이지수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도업체수나 연체율과 같이 과거 실적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2)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 · 가결

의결사항

2013년 2/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9조원으로 정한다.